

학교법인 우진학원 정관

(1984.02.29. 개정 관리과1042.3-.201)
(1990.04.26. 개정 관리과 25422-.501)
(1991.08.21. 개정 관리과 25420-.845)
(1991.10.24. 개정 행정과 25420-1023)
(1996.02.07. 개정 행정과 81423-195)
(1998.12.07. 개정 행정과 81422-1313)
(1999.03.02. 개정 학교운영지원과 81422-197)
(2000.06.09. 개정 학교운영지원과 81422-761)
(2002.02.14. 개정 학교운영지원과 81423-142)
(2002.12.05. 개정 학교지원과 81423-1369)
(2003.03.01. 개정 학교지원과 81423-183)
(2003.08.04. 개정 학교지원과 81423-806)
(2005.07.04. 개정 학교지원과 - 7195)
(2005.10.13. 개정 학교지원과 - 11436)
(2006.12.28. 개정 학교지원과 - 10681)
(2007.05.16. 개정 학교지원과 - 3539)
(2008.06.05. 개정 학교지원과 - 4894)
(2009.02.26. 개정 학교지원과 - 2021)
(2012.03.05. 개정 사학지원과 - 2614)
(2013.08.30. 개정)
(2014.11.26. 개정)
(2016.08.26. 개정)
(2017.02.16. 개정)
(2017.07.05. 개정)
(2018.02.02. 개정)
(2026.05.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우진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양서고등학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양평군 양서면 상촌길 31-12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 13 조 내지 제 17 조 < 삭제 >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20 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0 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 (임원의 겸직금지 및 보수)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 을 겸할 수 없다.
- ③ 법인은 상근하는 임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그 외 상근 임원이 아닌 자는 출근, 출석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의 2(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31 조의 3(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32 조 (수익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장 운영 사업
2. 토지 또는 건물 임대 사업
3. 주식 투자사업
4. 요식업 경영 사업

제 33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진농원을 경영한다.

제 34 조 (수익 사업체의 주소) 우진농원의 사무(업)소는 양평 221-1번지에 둔다.

제 35 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관할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 38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당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9 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교장·교감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임기로 한다.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는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교감은 이사장이 학교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고, 교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감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제1장, 2항, 3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 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⑧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제 39 조의 2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임용기간이 11개월 이내인 기간제교원의 임면은 학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을 임면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3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9 조의 4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9 조의 5(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 40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제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 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 41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 범위 내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또는 연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42 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3 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5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46 조의 2 (명예퇴직 수당)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준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6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7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7 조의 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8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마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48 조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48 조3(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 49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리 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0 조 (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51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1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1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 52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3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 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 (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 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 54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56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57 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 할 수 있다.

제 58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장의 제청에 있어야 한다.

④ 행정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59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는 법인정관에 따른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59 조의 2(정년) ① 법인 및 각급 학교에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 59조의 3(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사무직원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 60 조 (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 61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1 조의2 (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용한다.

제 62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 63 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 제 64 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65 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서무과를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 제 66 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 67조 (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68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68 조의 2(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양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8 조의 3(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 수 이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69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71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 72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3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교원의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정관 제71조와 7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

제 7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 76조 (서류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및 회의 결과와 집행 사항 등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집행하기 전에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7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7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9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80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1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2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 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3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제 84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85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규정이 정관에 위반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 의 결의로 삭제 정정할 수 있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86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는 영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양서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87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양서고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88 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89 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0 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91 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92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93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 신문에 공고한다.

제 9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어 경 찬	39.12.10	4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1-147
이 사	어 달 수	20.01.13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50
"	유 영 근	39.07.04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22-22
"	조 병 화	39.07.14	2년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33
"	김 봉 수	38.07.28	"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3-6
감 사	우 대 섭	39.08.02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81
"	강 신 관	40.03.14	1년	서울시 영등포구 개봉동 25-3

제 96 조 (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출연 재산 내역			평 가 준	평가금액(원)	출연 의사	비 고
			소재지	지 목	지적(평)				
교육용 (토지)	어경찬	1939. 12. 10	양서면 용당리 산15-1	임야	720	감정가	720,000	무상 출연	
"	"	"	양서면 용당리 219-2	대	42	"	147,000	"	
"	"	"	양서면 용당리 221-5	전	274	"	959,000	"	
"	"	"	양서면 용당리 221-3	전	37	"	185,000	"	
"	"	"	양서면 용당리 259-12	대	113	"	565,000	"	
"	"	"	양서면 용당리 232-1	답	555	"	2,220,000	"	
"	"	"	양서면 용당리 229	답	204	"	1,020,000	"	
"	"	"	양서면 용당리 228	답	82	"	410,000	"	
"	"	"	양서면 용당리 221-2	전	372	"	1,860,000	"	
"	"	"	양서면 용당리 230-1	답	658	"	3,290,000	"	
소 계					3,057		11,376,000		
교육용 (건물)	어경찬	1939. 12. 10	양서면 용당리 221-1	교사동 (세멘브럭)	62.56	감정가	2,794,800	무상 출연	
"	"	"	양서면 용당리 221-1	"	54.84	"		"	
"	"	"	양서면 용당리 221-1	"	54.84	"		"	
"	"	"	양서면 용당리 221-1	교사동 (변 소)	3.52	"		"	
소계					175.76		5,589,600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출연 재산 내역			평 가 기 준	평가금액(원)	출연 의사	비 고
			소재지	지 목	지적(평)				
교육용 (토지)	어경춘	1953.05.05	양서면 용당리 118	답	494	감정가	1,729,000	무상 출연	원출연자(어경춘)가 명의신탁자인 어경춘으로 출연한 재산임
"	"	"	양서면 용당리 225	전	99	"	297,000	"	"
"	"	"	양서면 용당리 227	답	398	"	1,592,000	"	"
"	"	"	양서면 용당리 223	답	318	"	1,272,000	"	"
"	"	"	양서면 용당리 226	답	204	"	816,000	"	"
"	"	"	양서면 용당리 221-1	전	206	"	721,000	"	"
"	"	"	양서면 용당리 159	전	72	"	216,000	"	"
"	"	"	양서면 용당리 224	답	159	"	636,000	"	"
소계					1,950		7,279,000		
계					5,007		24,244,600		
수익용 (토지)	어경찬	1939.12.10	양서면 증동리 613	답	701	감정가	2,453,500	무상 출연	
"	"	"	양서면 증동리 551-2	대	1,228	"	3,070,000	"	
"	"	"	양서면 증동리 587-1	전	356	"	1,068,000	"	
"	"	"	양서면 증동리 588	전	535	"	1,605,000	"	
"	"	"	양서면 증동리 587-4	대	454	"	1,589,000	"	
"	"	"	양서면 증동리 587-2	답	251	"	502,000	"	
"	"	"	양서면 증동리 519	답	1,034	"	3,102,000	"	
"	"	"	양서면 용당리 555-1	답	280	"	2,240,000	"	
"	"	"	양서면 용당리 552-2	전	228	"		"	
"	"	"	양서면 용당리 553-4	대	139	"	9,740,000	"	
소계					5,206		25,369,500		
수익용 (토지)	어경춘	1953.05.05	양서면 용당리 148-2	답	1,115	감정가	3,902,500	무상 출연	원출연자(어경춘)가 명의신탁자인 어경춘으로 출연한 재산임
계					6,321		29,272,000		
총계							53,516,600		

②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한 재산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출연 재산 내역			평 가 기 준	평가금액(원)	출연 의사	비 고
			소재지	지 목	지적(㎡)				
수익용 (건물)	어경찬	1939.12.10	양서면 양수리 997외 2필지 3층	건물	125	감정가	84,000,000	무상 기부	
소계					125		84,000,000	"	
교육용 (건물)	어경찬	1939.12.10	양서면 용당리 221-1	건물	1,937.69	감정가	341,017,600	무상 기부	
"	"	"	양서면 용당리 221-1	"	1,192	"	236,016,000	"	
소계					3,129.69		577,033,600		
교육용 (토지)	어경찬	1939.12.10	양서면 용당리 158	학교용지	1,762	감정가	475,740,000	무상 기부	
"	"	"	양서면 용당리 22	"	889	"	240,030,000	"	
"	박종영	1938.11.14	양서면 용당리 161-1	"	210	"	56,700,000	"	
소계					2,861		772,470,000		
계							1,433,503,600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현임 교장은 34조1항에 불구하고 1984년 2월 28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현임 교장은 34조1항에 불구하고 1984년 2월 28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설된 제58조(임용) 제4항은 현임(2016.8.26.) 행정실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2 명
일 반 직 계	3 명
4 급 (참 사)	1 명
5 급 (부참사)	명
6 급 (주 사)	1 명
7 급 (부주사)	명
8 급 (서 기)	1 명
9 급 (부서기)	명
기 능 직 계	9 명
6 등 급 계	
운전기사	1 명
목공기사	1 명
건축기사	1 명
전기기사	명
수도기사	명
교 환 원	1 명
고 용 원	5 명

별 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 명
교육행정 5급(사무관)	1 명
교육행정 6급(주 사)	1 명
교육행정 7급(주사보)	1 명
시설관리 8급	2 명
사무운영 9급	1 명